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1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외부감사인	▼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

2. 조치내용

○ 공인회계사 △△△

- 직무정지 1년

○ 공인회계사 ♡♡♡

- 직무일부정지 6월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▼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>

○ **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**

- ★★★★★㈜의 제46기('20.1.1.~'20.12.31.)부터 제48기('22.1.1.~'22.12.31.)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, ❶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와 관련된 감사절차 및 ❷특수관계자 거래 식별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○ 육가공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★★★★★㈜의 제46기('20.1.1.~'20.12.31.)부터 제48기('22.1.1.~'22.12.31.)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, 상업적 실질이 없는 육가공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 등